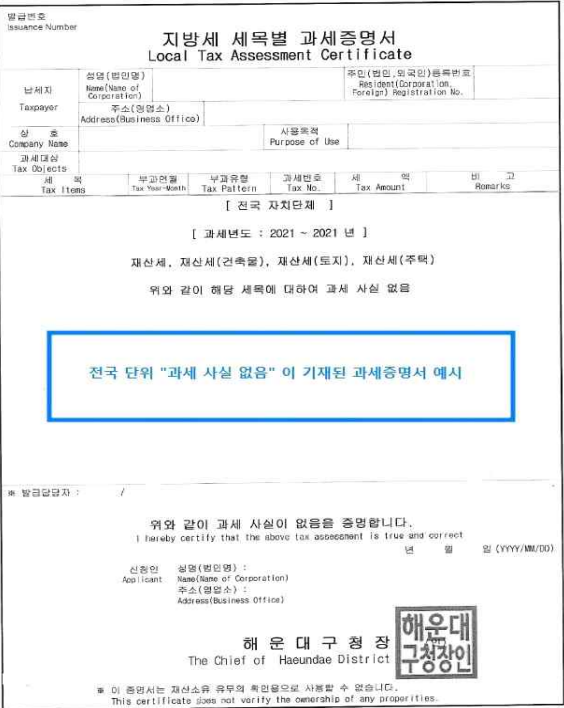


## 가계곤란 장학금 증빙서류 제출안내

가계곤란 장학금 제출서류 중 재산세, 건강보험료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각 장학금별로 신청 안내에 따라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함

### [재산세 관련 서류]

구분	준비서류	발급기관
해당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</li> <li>*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잘못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</li> </ul>	주민센터 및 구청
제출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모가 부양자일 경우 부·모·본인 각각 제출</li> <li>학생 본인이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</li> </ul>	
발급 대상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산세 중 건축물, 토지, 주택 (주민세, 교육세, 자동차세는 해당하지 않음)</li> </ul>	
과세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각 장학금 신청 안내의 해당년도 (예: 전년도, 최근 3년 등)</li> </ul>	
대상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국 자치단체</li> </ul>	
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양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, <b>전국 단위 "과세 사실 없음"이 기재된 과세증명서</b> 제출</li> <li>*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자치단체 '과세 사실 없음' 예시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 </div>	

**[건강보험료 관련 서류]**

구분	준비서류	발급기관
해당 서류	·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	1) 인터넷 발급: 건강보험관리공단 (nhis.or.kr) (공동인증서 필요)  2) 팩스 발급: 건강보험관리공단 (전화: 1577-1000)
대상 항목	·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월별 건강보험료 (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음)	
부모, (본인)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	· 부·모·(본인)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·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가입자(또는 부양자)로 있는 기간 동안의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	
부모 중 한 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	·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· 단, 건강보험증 피부양자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(급여개시유효일)이 해당 장학금 신청 요건의 일자 이전이며 건강보험증 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증서 번호가 일치해야 함	
형제·자매 및 조부모 등이 부양자이고 부모와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	·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· 피부양자(본인 및 부모)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	
학생 본인이 기혼인 경우	· 가입자(본인 혹은 배우자)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피부양자(본인 혹은 배우자)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	
지역보험 가입자인 경우	· 세대주(부양자)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원칙 · 세대원(피부양자) 명의로도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, 이 경우 건강보험증 번호와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증서 번호가 일치해야 함(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(급여개시유효일) 확인 필요)	

\*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학생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고, 이 경우 수급자 구분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체크되어 있어야 함

## [가족관계 관련 서류]

구분	준비서류	발급처
해당 서류	·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	1) 주민센터 2) 인터넷발급: 정부24(주민등록등본),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) 3) 교내 ECC 학생서비스센터 앞 발급기
부모가 부양자인 경우	· 주민등록등본 · 학생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	
부모가 이혼한 경우	· 주민등록등본 · 학생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·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	
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	· 주민등록등본 · 학생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사망한 부모의 주민번호가 공란이거나 사망으로 표기됨)	